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
----------	------

제출년월일 : 2012. 2.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1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을 등은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 삭제

- 1)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2)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3)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4)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문 : 제85조의2, 제58조의2, 제56조 제3항, 제60조제4항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을 등 정비

- 1)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조례에서 면제로 규정하던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으로 이관되면서 감면율만 100분의 100 범위에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여 현행 감면율과 동일하게 정비
- 2)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으로 이관된 감면율은 삭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율 정비

3. 개정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12.1.26. ~ 2012.2.15)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2.16)
-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 「지방세특례제한법」 ”로 한다.

제2조 중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재산세”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제9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지방세”를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 ----- ----- ----- ----- ----- ----- ----- -----</p>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p>
<p>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p>
<p>제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에 한정한다) 2.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p><삭제></p>

현행	개정안
<p>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p> <p>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5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p> <p>「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7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p>	<p><삭제></p>
<p>제8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 연도 공급가액을 기</p>	<p>제8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p> <p>1. 특급호텔 : 20%</p> <p>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p>

현 행	개 정 안
<p>준으로 한다)인 경우</p> <p>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소한 경우</p> <p>가. 특급호텔 : 20%</p> <p>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p>	
<p>제9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p>	<p><삭제></p>
<p>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 -----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 ----- ----- -----</p>